

영화산업 노사정 협의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3(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붙임 <영화산업 표준보수지침>에 대하여 동의함.

2025년 9월 30일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orean Film Council

FKMWU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Federation of Korea Movie Workers' Union

위원장 한상준



위원장 박찬희

kifa 한국영화제작가협회
KORE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PGK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Producers Guild of Korea

회장 이은



대표 이동하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표준보수”란 노동관계법령, 영화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에 관한 자료, 직무가치와 직무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영화근로자 보수의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법 제2조가 정하는 영화제작업에 종사하는 영화업자 및 영화근로자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인 작품에 종사하는 영화업자 및 영화근로자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제4조(적용기간) 이 지침에서 정하는 표준보수액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차기년도 10월 1일까지 차기년도 적용을 위한 표준보수액을 공표한다.

제5조(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보수를 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영화노사정협의회를 통해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영화노사정협의회를 통해 표준보수에 관하여 자율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간의 협의 내용과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표준보수지침을 결정 및 공표할 수 있다.

제6조(표준보수액의 결정 기준) ① 표준보수액의 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해당 보수수준에 반영되도록 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2. 영화근로자단체와 영화업자 등이 작성한 단체협약이 정하는 임금
3. 법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보수 수준
4. 영화근로자의 직무와 직급에 대한 직무가치
5. 영화근로자의 경력
6. 기타 불가상승률 등 보수수준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표준보수는 월 단위로 산정하며 주5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표준보수액) 영화근로자의 업무, 기술숙련도 등을 고려한 표준보수액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적용범위) ①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에 대해 프로덕션기간에 표준보수지침 적용을 권고한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이 지침보다 유리한 조건을 정한 경우에 그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전은 표준보수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급여 또는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하는 현물
3.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4. 근로계약 등에서 표준보수 외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

제9조(재정지원의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른 표준보수를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노무비 산정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2025. 10.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표준보수액(세전)

■ 직종별 표준보수월액

<부서별 기준금액 산정>

1. 기준금액(평균보수, 단위: 원)

구분	2024년 평균보수액
제작	3,489,727
연출	3,530,839
촬영	4,449,404
조명	4,410,545
미술	3,531,306
분장	3,461,848
의상	3,329,243
소품	3,471,173
동시녹음	4,024,711
그립	4,124,751
전체 평균	3,819,046

2. 직급별 보수금액 및 배율(단위: 원, 배)

구분	1st	2nd	3rd	4th 이하
금액	5,458,621	4,160,685	3,440,749	2,778,655
배율	1.43	1.09	0.90	0.73

* 배율 = 직급별 평균임금 ÷ 전체 평균

3. 계산식 : 기준금액(평균보수금액) × 직급별 배율

구분	기준금액 (부서 평균)	1st	2nd	3rd	4th 이하
제작	3,489,727 (A)	A×1.43	A×1.09	A×0.90	A×0.73
연출	3,530,839 (B)	B×1.43	B×1.09	B×0.90	B×0.73
촬영	4,449,404 (C)	C×1.43	C×1.09	C×0.90	C×0.73
조명	4,410,545 (D)	D×1.43	D×1.09	D×0.90	D×0.73
미술	3,531,306 (E)	E×1.43	E×1.09	E×0.90	E×0.73
분장	3,461,848 (F)	F×1.43	F×1.09	F×0.90	F×0.73
의상	3,329,243 (G)	G×1.43	G×1.09	G×0.90	G×0.73
소품	3,471,173 (H)	H×1.43	H×1.09	H×0.90	H×0.73
동시녹음	4,024,711 (I)	I×1.43	I×1.09	I×0.90	I×0.73
그립	4,124,751 (J)	J×1.43	J×1.09	J×0.90	J×0.73

* 4th 이하의 표준보수액이 최저임금 월액으로 산정된 보수액(2,878,610원) 보다 낮은 부서(제작, 연출, 미술, 분장, 의상, 소품)의 경우 4th 이하의 표준보수액이 최저임금 월액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기준금액을 최저월보수액(3,943,301원)으로 하고, 직급배율을 적용함.

<2025년 표준보수액>

1) 제작

구분	1st	2nd	3rd	4th 이하
월액(원)	5,638,921	4,298,198	3,548,971	2,878,610

2) 연출

구분	1st	2nd	3rd	4th 이하
월액(원)	5,638,921	4,298,198	3,548,971	2,878,610

3) 촬영

구분	1st	2nd	3rd	4th 이하
월액(원)	6,362,648	4,849,850	4,004,464	3,248,065

4) 조명

구분	1st	2nd	3rd	4th 이하
월액(원)	6,307,079	4,807,494	3,969,491	3,219,698

5) 미술

구분	1st	2nd	3rd	4th 이하
월액(원)	5,638,921	4,298,198	3,548,971	2,878,610

6) 분장

구분	1st	2nd	3rd	4th 이하
월액(원)	5,638,921	4,298,198	3,548,971	2,878,610

7) 의상

구분	1st	2nd	3rd	4th 이하
월액(원)	5,638,921	4,298,198	3,548,971	2,878,610

8) 소품

구분	1st	2nd	3rd	4th 이하
월액(원)	5,638,921	4,298,198	3,548,971	2,878,610

9) 동시녹음

구분	1st	2nd	3rd	4th 이하
월액(원)	5,755,337	4,386,935	3,622,240	2,938,039

10) 그림

구분	1st	2nd	3rd	4th 이하
월액(원)	5,898,394	4,495,979	3,712,276	3,011,068

■ 예산규모에 따른 조정

- 순제작비 기준 10억~20억 미만에 대해 위 표준보수액의 20%를 감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
- 예산규모에 따른 조정은 최근 3년 간 한국영화 평균 순제작비가 20억 원 이상이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 저예산영화의 경우 일반적인 상업영화 제작 방식과는 다를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경력수당 (해당없음)

■ 법정수당

- 월 표준보수액에는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및 월 초과근로시간(가산율 적용 후 78시간)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었음.